

5급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8.28.(금) 서울신문, “지자체 사무관까지 노조 가입? 공무원노조법 위반 논란”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. 1. 5. 「공무원노조법」 개정을 통해 5급(사무관) 이상 공무원도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였음

*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직급 제한(6급 이하)을 폐지하고, 소방·교육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확대

○ 다만, 노동조합 자주성 보호를 위해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·감독을 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은 직급과 상관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

□ 한편, 공무원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을 명예회원, 준회원, 후원회원 등으로 두고 있다 하더라도,

○ 명예회원 등이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조합 운영에 대한 권리·의무관계가 없다면 「공무원노조법」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

□ 고용노동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사관계 현장을 지도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	책임자	과 장	임세희 (044-202-7661)
		담당자	사무관	강재영 (044-202-7698)